공 고

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-73호

전파법 위반(준공검사기한경과)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부 산 전 파 관 리 소 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 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최*숙	92-2025-20-0000103	HL**JI	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03번길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문*기	42-2013-20-0000063	327명*호	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문*찬	42-2011-20-0000112	301조*호	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	무선국 준공검사 기한경과	무선국 허가취소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3. 처분일자: 2026. 11. 3.
4. 참고사항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.
나.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